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관리관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과약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득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기관에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3·4급1, 5급4, 6급5, 7급2)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안산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계양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부산강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3명, 5급 17명)을 증원하며, 동일 1급청 대비 낮은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직급체계 정비에 따라 과장급 3개 직위를 4·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 정보화 담당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산정보관리관 명칭을 정보화관리관으로 변경하며, 관할구역 명칭 사용으로 납세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인천세무서 명칭을 남동세무서로, 북인천세무서 명칭을 부평세무서로 변경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던 소득자료신고팀 및 소득자료분석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

서 정원 1명(5급 1명)을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으로 조정하며, 지방세 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4개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7.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제3조의 제목 “(전산정보관리관)”을 “(정보화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전산정보관리관”을 각각 “정보화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제11조제2호 중 “예산·경리·용도”를 “경리·용도”로 한다.

제1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예산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 단서 중 “하남지서장·동두천지서장·충북혁신지서장·당진지서장·광양지서장·영천지서장”을 “하남지서장·동두천지서장·충북혁신지서장·당진지서장·광양지서장·달성지서장·영천지서장”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8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단) ① 소득자료관리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득자료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업무

③ 소득자료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2의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도의 안산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안산시”를 “안산시 단원구”로 하고, 같은 란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도의 안산세무서란 다음에 동안산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안산 세무서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	-------------

별표 2의 인천지방국세청의 인천광역시의 명칭란 중 “북인천세무서”를 “부평세무서”로 하고, 같은 란의 관할구역란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를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하며, 같은 란 인천지방국세청의 인천광역시의 부평세무서란 다음에 계양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 양 세무서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별표 2의 인천지방국세청의 인천광역시의 명칭란 중 “남인천세무서”를 “남동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광역시의 북부산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사상구, 강서구”를 “사상구”로 하며, 같은 란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광역시의 북부산세무서란 다음에 부산강서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산강서 세무서	부 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	------------	-----------

별표 4에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남대구 세무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대구 세무서	달성지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

별표 4에 부산지방 국세청의 경상남도의 동울산 세무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울 산 세무서	울주지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 온양읍 · 청량읍 · 웅촌면 · 서생면은 제외한 다)
--------------	------	-----	--

별표 5의 번호 6의 세무서란 중 “북부산세무서”를 “부평세무서”로 하고, 같은 란의 과란 중 “재산세과, 법인세과”를 “재산법인세과”로 하며, 같은 표 번호 7의 세무서란 중 “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를 “인천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번호 8의 세무서란 중 “안양세무서”를 “안양세무서, 동안산세무서”로, 같은 란 중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를 “계양세무서,

서인천세무서, 남동세무서”로, 같은 란 중 “해운대세무서”를 “해운대세무서, 북부산세무서”로 하며, 같은 표 번호 10의 세무서란 중 “중부산세무서”를 “중부산세무서, 부산강서세무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894”를 “906”으로 하고, 일반직계 “890”을 “902”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119”를 “122”로, 전산사무관 “13”을 “14”로, 세무주사 “238”을 “242”로, 전산주사 “43”을 “44”로, 세무주사보 “159”를 “161”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20”을 “932”로 하고, 일반직계 “916”을 “928”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126”을 “130”으로, 전산사무관 “13”을 “14”로, 세무주사 “243”을 “246”으로, 전산주사 “45”를 “46”으로, 세무주사보 “163”을 “165”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20,471”을 “20,491”로 하고, 일반직계 “20,471”을 “20,491”로 하며, 서기관 “181”을 “18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4”를 “61”로, 행정사무관 “1,024”를 “1,045”로, 세무주사 “4,335”를 “4,331”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20,575”를 “20,595”로 하고, 일반직계 “20,575”를 “20,595”로 하며, 서기관 “181”을 “18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4”를 “61”로, 행정사무관 “1,065”를 “1,085”로, 세무주사 “4,373”을 “4,370”으로 한다.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3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전산정보관리관”을 “정보화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을 포함한 별표 6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

별표 10의2의 정원 100명(행정사무관 30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5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0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 본문 관련)

총계	20,471
일반직 계	20,471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5
서기관	18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1
행정사무관	1,028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세무주사	4,331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5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전산주사	10
세무주사보	4,545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4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세무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전산주사보	17
운전주사보	1
세무서기	5,415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22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70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세무서기보	3,706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5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155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29
운전서기보	160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1
열관리운영서기보	14

사무운영서기보	412
기록연구사	7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 본문 관련)

총계	20,575
일반직 계	20,575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5
서기관	18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1
행정사무관	1,068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세무주사	4,370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5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전산주사	10
세무주사보	4,548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4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세무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전산주사보	17
운전주사보	1
세무서기	5,437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22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70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세무서기보	3,706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5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155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29
운전서기보	160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1
열관리운영서기보	14

사무운영서기보	412
기록연구사	7

[별표 11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2의제3항 관련)

소득자료관리단 (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

총계	12
일반직 계	1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3
전산사무관	1
세무주사	4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제2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 --.
⑥국세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2. (현행과 같음)
1. 2. (생략)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신 설>	⑦ (현행과 같음)
⑦ (생략)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정보화관리관----- ----- ----- -----.
제3조(전산정보관리관) ①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화관리관 ----- ----- ----- ----- ----- ----- ----- ----- -----
②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5. (생략)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8. (생략)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4. (생략)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4. (생략)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6. (생략)

제4조의4(소득자료신고팀) ①

-----.

③ -----
----- 정보화관리관 -----
-----.

1. ~ 10. (현행과 같음)

④ -----
----- 정보화관리관 -----
-----.

1. ~ 5. (현행과 같음)

⑤ -----
----- 정보화관리관 -----
-----.

1. ~ 8. (현행과 같음)

⑥ -----
----- 정보화관리관 -----
-----.

1. ~ 4. (현행과 같음)

⑦ -----
----- 정보화관리관 -----
-----.

1. ~ 4. (현행과 같음)

⑧ -----
----- 정보화관리관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소득자료 신고팀장 1명을 둔다.

② 소득자료신고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득자료신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득자료 신고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소득자료신고 관련 홍보 및 교육 업무

3. 소득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

제4조의5(소득자료분석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소득자료 분석팀장 1명을 둔다.

② 소득자료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득자료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득자료 분석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소득자료 관련 외부기관 자

<삭 제>

<u>료제공 업무</u> 3. <u>소득자료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업무</u> 제8조(법인납세국) ① ~ ④ (생략)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4. (생략) ⑥ (생략)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u>예산·경리·용도</u> 및 청서관리 3. ~ 5. (생략) 제12조(교육기획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신 설></u>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 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u>하남</u>	제8조(법인납세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3. <u>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u>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지원과) ----- -----. 1. (현행과 같음) 2. <u>경리·용도</u> ----- --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기획과)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예산에 관한 업무</u> 제30조의2(지서장) ----- ----- ----- . ---- <u>하남</u>
---	---

지서장 · 동두천지서장 · 충북혁신지서장 · 당진지서장 · 광양지서장 · 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장 한시정원

<신 설>

지서장 · 동두천지서장 · 충북혁신지서장 · 당진지서장 · 광양지서장 · 달성지서장 · 영천지서장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단) ① 소득자료관리단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득자료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별표10의2의 정원 101명(행정사무관 31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u>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4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1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u>③ 소득자료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u>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u><삭 제></u>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	--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 재정부령 제81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구로 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소득자료분석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득자 료신고팀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 존속한다.</u>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u><삭 제></u>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894</u>	<u>906</u>	+12
·	·	·	
·	·	·	
일반직계	<u>890</u>	<u>902</u>	+12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u>	<u>2</u>	+1
·	·	·	
·	·	·	
행정사무관	<u>119</u>	<u>122</u>	+3
·	·	·	
·	·	·	
전산사무관	<u>13</u>	<u>14</u>	+1
세무주사	<u>238</u>	<u>242</u>	+4
·	·	·	
·	·	·	
전산주사	<u>43</u>	<u>44</u>	+1

세무주사보	<u>159</u>	<u>161</u>	+2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20</u>	<u>932</u>	+12
•	•	•	
•	•	•	
일반직계	<u>916</u>	<u>928</u>	+12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u>	<u>2</u>	+1
•	•	•	
•	•	•	
행정사무관	<u>126</u>	<u>130</u>	+4
•	•	•	
•	•	•	
전산사무관	<u>13</u>	<u>14</u>	+1
세무주사	<u>243</u>	<u>246</u>	+3
•	•	•	
•	•	•	
전산주사	<u>45</u>	<u>46</u>	+1
•	•	•	

세무주사보	<u>163</u>	<u>165</u>	+2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0,471</u>	<u>20,491</u>	+20
일반직 계	<u>20,471</u>	<u>20,491</u>	+20
·	·	·	
·	·	·	
서기관	<u>181</u>	<u>187</u>	+6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64</u>	<u>61</u>	-3
행정사무관	<u>1,024</u>	<u>1,045</u>	+21
·	·	·	
·	·	·	
세무주사	<u>4,335</u>	<u>4,331</u>	-4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0,575</u>	<u>20,595</u>	+20
일반직 계	<u>20,575</u>	<u>20,595</u>	+20
·	·	·	
·	·	·	
서기관	<u>181</u>	<u>187</u>	+6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64</u>	<u>61</u>	-3
행정사무관	<u>1,065</u>	<u>1,085</u>	+20
·	·	·	
·	·	·	
세무주사	<u>4,373</u>	<u>4,370</u>	-3
·	·	·	
·	·	·	